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11
----------	-------

발의연월일 : 2022. 5. 6.

발 의 자 : 박대출 · 김상훈 · 김선교
김성원 · 김 용 · 박덕흠
박성중 · 이명수 · 이 영
조명희 · 하영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급식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온 조리사가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 판정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흠(cooking fumes)에 해당 조리사들이 장기간 노출된 것이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음.

조리흠이라는 유해인자로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리흠에 이들이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는 작업환경측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에 해당 작업장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미세입자에 노출되는 근로

로자가 근무하는 급식실이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 작업장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25조제1항).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1항 중 “작업장으로서”를 “작업장(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미세입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급식실을 포함한다)으로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u>작업장으로서</u>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 ----- ----- ----- ----- <u>작업장(기</u> <u>름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발생</u> <u>하는 미세입자에 노출되는 근</u> <u>로자가 근무하는 급식실을 포</u> <u>함한다)으로서</u> ----- ----- ----- -----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